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21일, 정성호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9. 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2. 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

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성호의원)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절차 명시

개정안은 군검사의 직무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할 것을 명확히 하며,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안 제228조의3 신설 등).

개정안은 이첩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첩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및 현행법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이첩 의무를 군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규정(제44조)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첩 의무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군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경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규정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국방부는 현행법 제228조 제3항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군검사의 이첩 관련 직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별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군 수사기관에서의 이첩이 있어야만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등에 대한 상호협력의 원칙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군검찰 사무 지휘·감독 시 서면 지휘 원칙 명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군검사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때 원칙적으로 그 목적과 내용, 이유가 기재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나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되 이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과 각 군참모총장이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임 (안 제39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권한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검사의 독

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정안은 검찰청법 제7조, 제8조와 비교하더라도 구체적 지휘·감독 방식 관련하여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수사업무의 신속성·다양성,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목적에 비춰 다른 조직과 달리 엄격한 상명하복, 신속한 명령하달 체계를 요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 시, 서면 지휘·감독 원칙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39조의2 제1항의 ‘지휘·감독 권한’과 제2항에 규정된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그 적용에 있어 상호 간 적용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위원)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지휘·감독 권한과 군검사의 독립성 보장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군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이첩 과정을 포함함.

또한, 민간 수사기관이 관할에 따른 군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 요구 시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민간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도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등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 붙임 서류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는 경우 서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편,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이첩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 수사기관이 재판권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며, 민간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제228조의3제2항에 따라 이첩을 요구한 사건에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등을 촉탁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는 경우 서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 및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39조의2제1항).

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검사의 제37조제1항의 직무수행 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나 “우선적으로” 문구를 삭제함(안 제39조의2제1항).

다.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규정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44조).

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28조의3제2항).

마. 이첩을 요구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등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8조의3제3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38조 단서와 제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안 제39조의2제2항 중 “독립성을 우선적으로”를 “독립성을”로 한다.

안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안 제228조의3제2항 중 “군사법경찰관은”을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로 한다.

안 제228조의3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제39조의2(지휘·감독의 원칙) ① 제38조와 제39조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그 목적과 내용, 이유가 기재되고 지휘·감독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지휘·감독한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지휘·감독의 원칙) ① 제38조 단서와 제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같음)
	② <u>대검찰청, 고위</u>	② -----
	<u>공직자수사처, 경찰</u>	-----
	<u>청, 또는 해양경찰</u>	-----
	<u>청은 각 수사기관</u>	-----
	<u>이 관할하는 사건</u>	-----
	<u>으로서 재판권이</u>	-----
	<u>군사법원에 있지</u>	-----
	<u>아니한 범죄를 인</u>	-----
	<u>지한 경우 그 사건</u>	-----
	<u>의 이첩을 군검사</u>	-----
	<u>또는 군사법경찰관</u>	-----
	<u>에게 요구할 수 있</u>	-----
	<u>고, 군검사 또는 군</u>	-----군
	<u>사법경찰관은 이에</u>	<u>사법경찰관은 지체</u>
	<u>따라야 한다.</u>	<u>없이</u> -----
		-----.
	③ <u>제1항에 따라</u>	③ <u>제1항 또는 제2</u>
	<u>이첩받은 사건에</u>	<u>항에 따라</u> -----
	<u>관하여 검사 또는</u>	-----
	<u>사법경찰관은 다음</u>	-----
	<u>각 호의 어느하나</u>	-----
	<u>에 해당하는 경우</u>	-----
	<u>에 군검사 또는 군</u>	-----
	<u>사법경찰관에게 수</u>	-----
	<u>사 및 영장의 집행</u>	-----

	<u>또는 집행지휘를</u> <u>촉탁할 수 있다.</u> 1.~ 2. (생략)	----- -----. 1.~ 2. (개정안과 같음)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지휘·감독의 원칙) ① 제38조 단서와 제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u>범죄 수사</u>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의2. ~ 3.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 -----. 1. <u>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u>----- 1의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지휘·감독의 원칙) ① <u>제38조 단서와 제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u> ② <u>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u>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 2. (생략)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② (생략)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

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
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청구 여부 결
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은 제4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
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
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
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
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
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
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